

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 
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0. 3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

##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52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
나. 준용규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(2022. 9. 8. ~ 9. 28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‘2022년 12월 31일’에서 ‘2027년 12월 31일’로 연장하는 것으로, 이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며,
- 안 제8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(2021. 8. 26.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.

### 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로 복구공사 및

사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,  
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 
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<신설 2015. 7. 2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